

主要 農産物의 上限價格 推定模型 開發과 適用

許 信 行

研究委員, Ph. D. (農業經濟學)

丁 安 聲

研究員, 農業政策室

- I. 上限價格設定의 必要性
- II. 上限價格 構成要素와 推定模型
- III. 上限價格의 推定
- IV. 政策의 彈力的 運用

I. 上限價格設定의 必要性

上限價格은 價格安定帶政策의 일환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격의 일종이다. 이 가격이 왜 필요하며, 모든 농산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施設園藝나 畜産物과 같이 生産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은 극심한 季節變動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와 같이 그 생산이 계절적으로 이루어진 농산물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심한 季節變動을 한다. 특히 양파나 마늘처럼 부패성을 가진 농산물의 가격은 端境期에 폭등하는 경우가 많다. 端境期價格의 폭등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자

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다. 이들 농산물을 장기간 저장한 극소수의 농민들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端境期價格이 폭등하면 바로 이어지는 새로운 생산면적이 늘어나서 次期生産物의 價格暴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에게도 이로운 것이 없다.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의 회생 위에서 중간상인이 暴利를 취할 뿐이다.

季節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供給이 대개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端境期의 供給이 需要보다 적을 때에는 市場에서 假需要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다. 期待價格의 상승이라는 판단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 농산물의 需給事情에 따른 정상적인 去來行爲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公共機關의 市場介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公共機關의 市場介入은 가능한 극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端境期價格을 적정수준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介入手段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게 된다. 문제는 어떤 수준이 적정가격이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

느냐에 모아진다. 우선 適正價格의 유지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端境期에 上限價格을 法的으로 일정수준에 고정, 통제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오히려 暗去來市場의 형성 등 流通秩序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洪水出荷期の 生産者價格 支持政策과 연계시켜 이때 買入하여 저장해 둔 농산물을 端境期에 방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下限價格 또는 最低保障價格의 결정방법과 유지수단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上限價格의 決定方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삼겠다.

Ⅱ. 上限價格 構成要素와 推定模型

1. 構成要素

上限價格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流通活動 내지 商去來行爲를 저해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上限價格이 정상적인 流通費用과 中間利潤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民間流通이 마비되거나 각종 형태의 流通不條理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民間流通業者가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商行爲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民間流通이 마비되면 해당품목의 모든 流通物量을 公共機關이 취급해야 된다는 엄청난 문제거리가 발생한다. 公共機關이 民間機構보다 더 효율적이라면 또 별개의 과제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산물유통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公共機關의 市場介入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中間商人을 견제하여 市場活動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上限價格은 적절한 유통

마진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적절한 上限價格은 농산물 생산 직후 出荷期の 市場均衡價格에 流通諸費用과 中間流通人 또는 機構의 經濟活動에 대한 正常利潤 등을 모두 加算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流通諸費用은 流通機能을 수행한 비용으로서 대략 아홉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들 流通費用은 농산물의 販賣費用, 購買費用, 貯藏費用, 輸送費用, 加工費用, 標準化費用, 金融費用, 危險負擔에 따른 損失 내지 費用, 그리고 市場情報에 따른 費用을 포함한다. 이러한 費用과 利潤의 폭은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時間도 上限價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變數로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上限價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포함시켜야 될 要因으로 洪水出荷期の 市場價格, 流通費用, 中間利潤, 그리고 貯藏期間 즉 時間을 들 수 있다. 물론 流通費用은 아홉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要因들이 그안에 포함된 셈이다.

이 단계에서 한 가지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上限價格을 결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문제다. 이 출발점은 농산물의 基礎價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農產物價格이란 수시로 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價格이 季節的으로 급변하고, 또 같은 시점에서 流通段階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政府가 어떤 형태로건 市場에 介入하는 경우 政策價格과 市場價格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의 어떤 價格을 기초로 삼고, 上限價格을 추적해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上限價格 결정을 위한 基礎價格은 뒤에서 품

목별로 밝혀지겠지만, 개념상 그것은 수확 직후의 集中出荷期에 형성된 都賣價格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民間流通人들에 의한 농산물 貯藏行爲는 洪水出荷期の 都賣市場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누구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서 출발해야 上限價格이 端境期の 流通秩序를 혼란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非現實的인 어떤 특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上限價格을 유도하게 되면 정상적인 流通活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上限價格이 正常價格의 수준보다 낮으면 中間商人들의 貯藏行爲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높으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上限價格은 모든 流通費用과 正常利潤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밝힌 제반 要因들이 上限價格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推定模型

앞에서 밝힌 上限價格 構成要素들을 자료회독의 편리성이나 변화의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통합, 再分類하면 크게 農産物買入價格 P_B , 買入資金의 機會費用(金融費用) K , 買入에 따른 附帶費用(販購買費, 輸送費, 標準化 및 包裝費 등) R , 貯藏費用 S , 物量損失(減耗 혹은 物的危險負擔) L , 價格危險 혹은 인플레이션 I 그리고 中間流通人 혹은 流通機構의 經濟利潤 Π 로 나누어진다. 이들 要因을 函數形態로 집약하면 上限價格 P_U 는 다음과 같다.

$$P_U = f(P_B, K, R, S, L, I, \Pi) \quad (1)$$

막연한 函數形態를 計算式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變數 하나 하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먼저 농산물의 買入價格 또는 基礎價格

P_B 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이는 洪水出荷期の 월 평균 都賣價格 내지 農家販賣價格이므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P_B 는 市場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조사 발표된 價格資料 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에는 買入資金의 機會費用에 대해서 알아보자. 資金의 機會費用은 농산물 買入者의 능력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 수많은 流通人들의 資金機會費用을 알아낼 수는 없는 일이다. 통상 가장 보편적인 機會費用은 銀行利率에 해당된다. 事業資金이란 관련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 보통 銀行으로 예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利子는 매월 발생하는 것이므로 買入資金의 機會費用 증가율 \dot{K} 은 다음과 같이 月利率과 時間(月)의 函數로 나타난다.

$$\dot{K} = (1+i)^t - 1 \quad (2)$$

이번에는 또 附帶費用 R 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상 농산물을 買入해서 저장하는데 따른 附帶費用이란 많은 것도 아니지만 流通人이 이런 비용의 投入과 운영으로 正常利潤을 허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비용에 대한 利子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累積시켜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附帶費用率 \dot{R} 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해진다.

$$\dot{R} = \frac{R}{P_B} \quad (3)$$

다음에는 농산물의 貯藏費用에 대해서 알아보자. 貯藏費用은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利率 α 는 流通人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아진다.

$$\alpha = \frac{S}{P_B} \quad (4)$$

그런데 貯藏期間에 따라 費用이 線型으로 증가

하기 때문에 貯藏費用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월평균 貯藏料率 α 와 時間(月) t 의 함수로 나타난다.

$$\dot{S} = \alpha t \quad (5)$$

다음에는 또 貯藏을 포함한 全流通過程에서 발생하는 減耗量, 즉 物的危險負擔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는 주로 農產物の 腐敗性이나 변질 등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損失이 나머지 保全物量에 전가되는 셈이다. 減耗에 따른 비용이란 앞에서 열거한 K, R, S 의 비용을 감도올만큼 保全物量에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物的危險(減耗)負擔率 \dot{L} 은 다음과 같아진다.

$$\dot{L} = \frac{\dot{K} + \dot{R} + \dot{S} + \dot{Q}}{1 - \dot{Q}} - (\dot{K} + \dot{R} + \dot{S}) \quad (6)$$

여기서 \dot{Q} 는 저장기간의 減耗率인데, \dot{Q} 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漸增 또는 漸減하느냐 아니면 不變이냐에 따라서 \dot{L} 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고추의 경우 일단 건조된 상태로 저장하면 시간의 경과에 별로 관계없이 減耗率이 일정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나 水分含量이 많은 양파나 다늘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시간의 경과와 함께 減耗率이 漸增하게 된다. 이런 경우 減耗率 \dot{Q} 는 다음과 같이 단위 기간의 減耗率 δ 와 시간(月) t 의 函數로 된다.

$$\dot{Q} = \delta t \quad (7)$$

따라서 (7)式을 (6)式에 代入하면 \dot{L} 는 다음과 같아진다.

$$\dot{L} = \frac{\dot{K} + \dot{R} + \dot{S} + \delta t}{1 - \delta t} - (\dot{K} + \dot{R} + \dot{S}) \quad (8)$$

다음에는 將來價格變動의 불확실성에 따른 危險負擔에 대해서 알아보자. 將來價格의 불확실

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겨날 수 있다. 하나는 농산물 자체가격의 변동, 즉 貯藏에 따른 비용과는 관계없이 해당 농산물의 需給變動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의 변동이다. 이 경우 流通人の 입장에서 볼 때 將來價格이 總費用보다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낮아지는 것은 損失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政策을 운용하는 정부의 입장에서서는 반대로 端境期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서는 將來價格이 정상 수준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上限價格制를 설정하려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서는 自體價格의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 危險負擔에 대해서는 논외로 미루어둘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하나의 價格變動,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危險負擔은 上限價格決定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아래서는 費用과 收益의 實質價値가 떨어지므로 그에 상응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價格變動에 따른 危險負擔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요, 이는 다른 비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dot{I} = (1 + \dot{K})(1 + \dot{R} + \dot{S})(1 + \theta) - 1 \quad (9)$$

여기서 θ 는 인플레이션率이고, 이는 時間의 函數이므로 월별 物價上昇率을 r 라고 하면 다음과 같아진다.

$$\theta = rt \quad (10)$$

마지막으로 經濟利潤에 대한 배려인데 이는 사실 買入資金의 機會費用을 이미 포함시킨 상태에서 고려하는 것이므로 流通活動에 대한 補償 내지는 超過利潤의 개념에 해당된다. 貯藏에 따른 모든 비용이 시간에 따라 漸增하는 것으로

감안되었기 때문에 經濟利潤은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과제는 政策決定者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참고로 製造業部門의 지난 3년간 평균 利潤率 같은 것을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표로 될 수 있다. 따라서 經濟利潤率 \dot{I} 는 다음과 같이 政策家가 선택한 利潤率 π 에 불과하다.

$$\dot{I} = \pi \quad (11)$$

앞에서 논의한 要因들을 모두 한 데 묶어서 端境期의 上限價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基礎價格에 다른 要因들이 加算된다.

$$P_U = P_B(1 + \dot{K} + \dot{R} + \dot{S} + \dot{L} + \dot{I} + \dot{H}) \quad (12)$$

(12)式에 (2)式~(11)式까지를 代入하되, 腐敗性과 貯藏性 農産물을 구별하여 上限價格 P_U 를 유도하면 각각 다음과 같아진다.

〈腐敗性 農産物의 上限價格 推定式〉

$$P_U = P_B \left[\pi + (1+rt)(1+\dot{R}+\alpha t)(1+i)^t + \frac{(\dot{R}-1) + (\alpha+\delta)t + (1+i)^t}{1-\delta t} \right] \quad (13)$$

〈貯藏性 農産物의 上限價格 推定式〉

$$P_U = P_B \left[\pi + (1+rt)(1+\dot{R}+\alpha t)(1+i)^t + \frac{(\dot{R}+\dot{Q}+1) + \alpha t + (1+i)^t}{1-\dot{Q}} \right] \quad (14)$$

III. 上限價格의 推定

農産物 出荷期 이후의 소비자 가격이 언제 폭등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政策當局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上限價格을 일별로 미리 추정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上限價格을 미리 추정해야 한다는 희망때문에 上限價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要素들의 실제치를 조사할 수가 없게 된다. 설령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장에 따른 각종 附帶費用이나 保管料 그리고 減耗量 등에 대해서 그해의 전국 대표치를 구해대기란 방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推定公式 (13)과 (14)를 보면 몇 가지 기본적인 파라미터만 알 경우 上限價格은 쉽게 추정될 수 있다.

上限價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要素들의 파라미터를 <表 1>에서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利率이나 經濟利潤率은 거의 고정되다싶이 하고, 최근에는 物價도 안정되어 있어서 附帶費用이나 貯藏料率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貯藏에 따른 減耗率인데 요즘에는 貯藏施設들이 많이 근대화되어 있어서 減耗率 자체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要素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上限價格을 추정한다 해도 현실과 멀어질 이유는 별로 없

表 1 上限價格의 推定에 필요한 파라미터 一覽表

	마	늘	양	파	고	추
月平均利率係數(i) ¹⁾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附帶費用率係數(\dot{R}) ²⁾	0.136	0.136	0.136	0.136	0.136	0.136
月平均貯藏料率係數(α) ³⁾	0.012	0.070	0.002	0.002	0.002	0.002
減耗率係數(\dot{Q}) ⁴⁾	—	—	0.021	0.021	0.021	0.021
月平均減耗率係數(δ) ⁵⁾	0.035	0.025	—	—	—	—
月平均物價上昇率係數(r) ⁶⁾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0.0025
經濟利潤率係數(π) ⁷⁾	0.108	0.108	0.108	0.108	0.108	0.108

註: 1) 一般銀行 定期預金(1年滿期) 利率 0.100을 月利率로 換算함.

2) 1980~83년간의 附帶事業費 比率(=附帶事業費/買入費)의 平均值(農開公, 「政府備蓄事業總決算書」各年度).

3) 農開公, 「中·長期 備蓄規模 設定(內部資料)」, 1983.

4) 3)과 同一.

5) 3)과 同一.

6) 1986年 物價上昇率 0.030(EPB指標)을 月平均 上昇率로 換算함.

7) 1983~85年 製造業의 經營資本 營業 利率率(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6).

다.

上限價格의 推定公式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마늘, 양파, 고추의 上限價格을 월별로 추정한 결과는 <表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우선 上限價格推定을 세 품목에 국한시킨 것은 정부가 1986년 價格安定帶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들 세 품목이기 때문이다. 추정방법을 알고 그에 필요한 파라미터만 획득하면 다른 농산물의 上限價格도 간단하게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基準月の 가격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貯藏業者들이 농산물을 買入하는 것은 주로 洪水出荷期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의 평균가격이 基準價格으로 잡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마늘과 양파의 경우 洪水出荷期인 6~8월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았고, 고추의 경우에는 9~10월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면 上限價格이 적용되는 1번째 달은 마늘과 양파의 경우 9월이 되겠고, 고추의 경우에는 11월이 된다. 9번째 달은 次期生産物의 出荷期가 시작되기 직전이므로 그후의 上限價格을 추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上限價格의 추정을 위한 基準價格은 都賣價格이어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마늘과 양파 그리고 고추의 경우 競買制를 도입한 法定都賣市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基準價格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더욱이 이들 농산물의 품종과 품질 그리고 크기 등이 다양해서 같은 市場 안에서도 가격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基準價格을 어떤 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上限價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일단 마늘과 양파의 경우 農家販賣價格을, 그리고 고추의 경우에는 韓銀의 都賣價格을 기준가격으로

表 2 主要 政策對象農産物の 上限價格 推定値, 1986年産

順番月	마늘		양파		고추	
	上限價格 引上率 (P)	上限價格 (P _B) (원/kg)	上限價格 引上率 (P)	上限價格 (P _B) (원/kg)	上限價格 引上率 (P)	上限價格 (P _B) (원/kg)
基準月	0.244	1,321	0.244	251	0.244	3,794
1번째月	0.466	1,557	0.572	318	0.429	4,358
2	0.558	1,655	0.771	358	0.453	4,432
3	0.654	1,757	0.978	400	0.477	4,505
4	0.757	1,866	1.193	443	0.503	4,584
5	0.867	1,983	1.419	489	0.527	4,657
6	0.985	2,108	1.653	536	0.552	4,734
7	1.113	2,244	1.897	585	0.578	4,813
8	1.250	2,390	2.154	637	0.604	4,892
9	1.400	2,549	2.423	691	0.631	4,975

* 基準價格(P_B)은 마늘·양파의 경우 6~8月 平均으로서 각각 1,062원/kg, 202원/kg(農協調査月報, 農家販賣價格資料), 고추의 경우9~10月 平均으로서 3,050원/kg(韓國銀行, 都賣價格資料)임.

삼았는데, 그 이유는 두 자료가 都賣市場의 實勢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된 上限價格을 잘 관찰해 보면, 基準月の 가격에 비하여 端境期の 마지막 달인 9번째 月の 가격이 마늘의 경우 1.9배, 양파 2.8배, 그리고 고추의 경우 1.3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마늘, 양파의 순서로 端境期 上限價格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腐敗性으로 인한 저장비용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腐敗性이 강한 양파의 경우 그 腐敗率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추정한 上限價格의 격차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된 上限價格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 3개년간의 價格變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마늘의 가격변동을 보면, 過剩生産에 따른 비정상적인 貯藏으로 端境期價格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1985년을 제외시키고 나면 나머지 1983년과 1984년의 가격변동은 1986년의 上限價格 豫測値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만 基礎價格이 서로 다른 것은 해당년도의 需給事情과

그림 1 마늘의 月別 價格變動 比較, 198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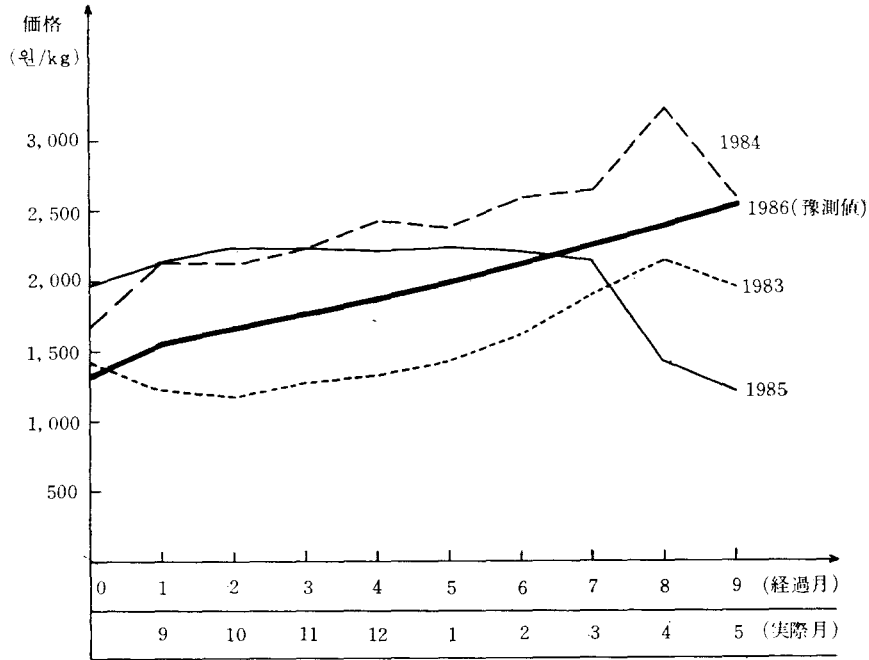


그림 2 양파의 月別 價格變動 比較, 198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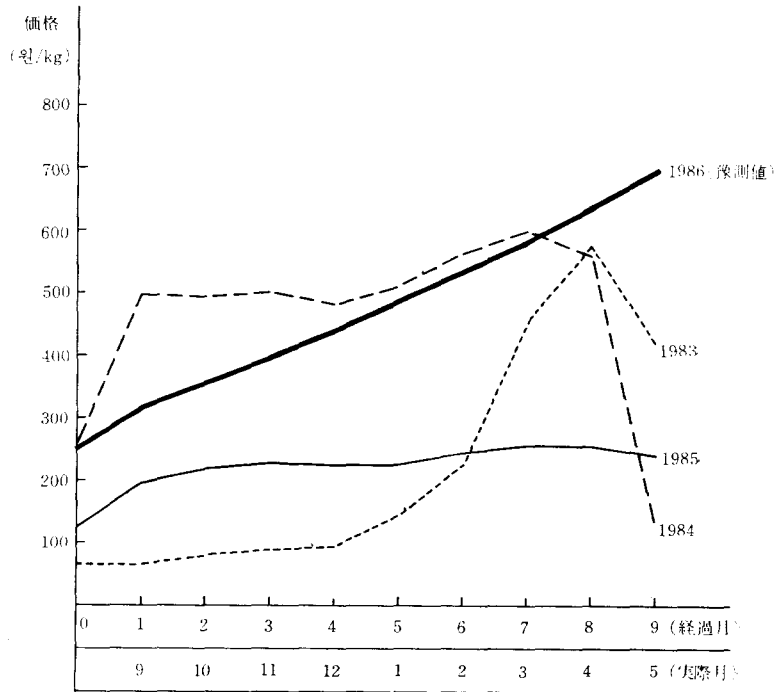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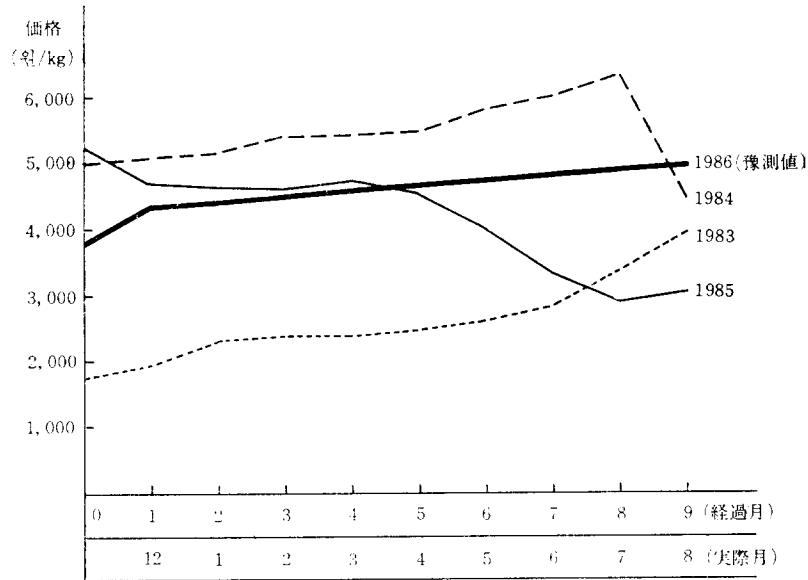


그림 3 고추의 月別 價格變動 比較, 1983~86



原價構成上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공통된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端境期の 마지막 달인 9번째 月에 있어서 지난 3년 동안의 실제가격은 떨어지는데 반해서 86년도의 上限價格 豫測値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저장마늘의 비용이 감축되기 때문이라기보다 저장마늘의 질적 저하와 햇마늘의 출하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렇지만 端境期の 마지막 달에 가서 物量供給의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여기서 추정된 上限價格은 정책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양파의 가격변동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생산된 1985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983년과 1984년의 가격변동은 1986년의 上限價格 예측치와 대체로 유사하다. 물론 수확 직후의 가격변동에 많은 차이가 있고, 또 端境期 마지막 달에는 과거의 실제가격이 떨어진 데 반해서 1986년의 예측치는 올라가고 있다. 이와같이 불규칙한 변동은 중간비용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期待價格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결과이다. 그리고

基礎價格의 차이도 근본적으로 생산량의 변동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84년의 경우 過少生産에도 불구하고 基礎價格이 낮았던 것은 전년도의 過剩生産에 따른 移越量과 27千%의 輸入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파의 가격변동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양파가 부패하기 쉽고 또 많은 부피를 갖기 때문에 생산량과 저장량의 크기 그리고 돌아올 가격의 변동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市場이 정상으로 움직인다면 여기서 추정된 上限價格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추의 가격변동 역시 <그림 3>에서 보면 1985년을 제외하고 1983년과 1984년의 실제가격이 1986년의 上限價格 豫測値와 형태면에서 비슷하다. 다만 1984년의 마지막 9번째 月の 가격이 폭락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1985년에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83년의 기초가격이 현저하게 낮았던 이유는 그해의 생산량이 밋소 유례

가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5년 端境期價格이 떨어진 이유는 높은 期待價格으로 중간상인들이 備蓄을 많이 해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추가격의 변동에서 흥미로운 것은 연중 거의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고추 자체의 특성, 즉 작은 부피와 낮은 부패성 그리고 저장의 용이성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IV. 政策의 彈力的 運用

여기서 추정한 上限價格은 그야말로 적정한 가격에 해당된다. 非營利 公益團體인 農開公의 附帶費用과 貯藏費用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이윤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上限價格을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정부는 이러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市場價格이 이를 벗어날 때마다 備蓄物量을 방출하여 그 이상의 상승을 억제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문제는 실제 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해진다.

上限價格推定에 이용된 자료는 일종의 평균치에 불과할 뿐이다. 같은 농산물을 買入하여 비축했다라도 民間流通人 가운데에는 農開公의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더 적게 지출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농산물의 腐敗率에 있어서도 貯藏業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같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여기서 추정한 上限價格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 上限價格은 政策推進에 필요한 基準價格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市場價格이 上限價格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備蓄物量의 放出을 준비하는 출발

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市場價格이 上限價格을 단기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등하지 않는한 즉각적인 방출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民間流通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려면 市場價格이 上限價格을 약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備蓄物量을 성급하게 방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 商去來에 있어서 正常利潤만 허용한다면 物量과 價格上의 위험부담을 안고 일론 市場에 뛰어들 流通人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농산물의 유통과정에 뛰어난 중간상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각종 형태의 流通不條理를 자행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한 마진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 있는 上限價格을 基準價格으로 삼고, 실제 市場의 需給事情 변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備蓄物量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노련한 기술이 필요해진다.

參考文獻 및 資料

- 金榮喆, “農村의 私債利率決定要因에 關한 理論的 考察”, 「農村經濟」, 第2卷 第1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3.
- 金學敎, 「貨幣와 利子」, 法文社, 1984.
- 農漁村開發公社, 「中·長期備蓄規模設定(內部資料)」, 1983.
-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村物價總覽」, 指定統計, 第336—11—01號, 1985.
- 李貞煥·丁安聲, 「農業金融制度改善方案」, 研究報告 1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12.
- 池清·曹淡, 「投資論」, 貿易經營社, 1986.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5.
- 許信行, 「農産物 價格政策」, 研究叢書 1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許信行外, 「農水産物 價格安定政策開發을 위한 調査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Stone, B. K., 「Risk, Return and Equilibrium; A General Single Period Theory of Asset Selection and Capital Market Equilibrium」, The MIT Press, 1970.